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10 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25-12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재무과)	1
2025-126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4
2025-127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재무과)	20
2025-128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행복나눔과)	23
2025-129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미래농업과)	29
2025-13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미래농업과)	44
2025-131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미래농업과)	54
2025-132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농업소득과)	60
2025-133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사업소)	71
2025-134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시설사업소)	7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5-1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1) 근 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2) 기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액 : 4,063천원

- 1) 2026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출연금	4,796	4,063	4,063	-	-	4,063	

※ 산출기초 : '24년 결산 보통세 40,627,030천원 × 1.0/10,000

다. 부서의견

- 1)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기관 현황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5년도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2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소재)]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02-2071-2748			
				www.kilf.re.kr			
주요연혁	2011. 2. 설립등기, 2011. 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5년 8월 기준)	○ 정원 78명 / 현원 64명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등
	정 원	78명	1명	2명	50명	4명	21명
	현 원	64명	1명	2명	34명	4명	23명
총인원	98명	정원외 인원 34명 (파견공무원12, 위촉연구·전문원16, 행정원등6)					
임 원 (‘25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이 사 장	정 종 섭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4.2.2.~’27.2.1.	
	부이사장	김 하 수	경상북도 청도군수			‘25.3.13.~’26.3.12.	
	이 사	강 성 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김 성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 연 직	
	이 사	오 준 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4.8.30.~’25.8.29.	
	이 사	이 태 산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4.8.30.~’25.8.29.	
	이 사	조 병 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4.8.30.~’25.8.29.	
	이 사	신 동 헌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24.8.30.~’25.8.29.	
	이 사	김 성 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25.3.13.~’26.3.12.	
	이 사	강 범 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5.3.13.~’26.3.12.	
	이 사	김 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25.3.13.~’26.3.12.	
	이 사	박 관 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3.8.30.~’25.8.29.	
	감 사	김 정 선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경 태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4.2.28.~’26.2.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39,826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11년~’25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4.12.31기준	자산	27,444
	예산액	18,069	17,379	19,269		부채	1,875
	지자체 지원액	13,797	12,383	13,078		자본	25,56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063			16,309		1,82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5-126
----------	----------

제출자	거창군수
-----	------

① 유기농복합단지 건립(건물의 신축)

1. 제안이유

- 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 복합시설 조성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의 장 마련
- 나.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거창창포원 일원에 조성하여 대표관광지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
- 2)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년간)
- 4) 사 업 량 : 대지면적 13,063.6㎡, 연면적 3,558.26㎡
- 5)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레스토랑, 카페, 판매장, 가공장, 체험시설 등 조성
- 6) 사 업 비 : 18,000백만원 (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형식)	연면적				
취득 (신축)	건물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건물 1동	3,558.26	14,492,580	2027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거창군

※ 주요시설

구 분	용 도	연면적(m ²)	비고
계		3,558.26	
유기농 레스토랑	제2종근린생활시설	447.11	
유기농 카페	제2종근린생활시설	520.37	
유기농 가공실 및 가공체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291.16	
친환경 농식품 판매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384.40	
씨앗도서관	제1종근린생활시설	93.70	
유기농 식문화 교육장/진로체험교실	제1종근린생활시설	267.33	
사무실/회의실/창업활성화센터	제1종근린생활시설	168.32	
회 랑	-	779.03	
공용 및 기타	-	606.84	

다. 추진경과

- 1) 2020. 11. : 사업부지 공유재산 심의
- 2) 2021. 4. : 거창군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원안 의결)
- 3) 2022. 3. : 공모사업 선정
- 4) 2022. 7.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조건부 2단계)
- 5) 2022. 11. : 거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6) 2023. 8. :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7) 2023. 10. : 기본계획 농식품부 승인
- 8) 2024.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통보(경남 공공건축지원센터)
- 9) 2024. 7. : 거창군 공공건축심의 완료
- 10) 2024. 10. : 설계용역 착수
- 11) 2025. 3.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12) 2025. 4. : 제로에너지예비인증 완료
- 13) 2025. 5. : 녹색건축예비인증 완료
- 14) 2025. 5. : 건축허가 신청(거창군 도시건축과)
- 15) 2025. 6. : 실시설계 및 운영방안 용역 합동보고회
- 16) 2025. 7. : 설계경제성(VE) 검토 완료

라. 향후계획

- 1) 2025. 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열람 의견청취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 2025. 8.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완료
- 3) 2025. 9. 2. ~ 9. 10.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의회 의견 청취
- 4) 2025. 10. :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 5) 2025. 10. : 군계획위원회 개최
- 6) 2025. 11. : 경남도 관련부서 협의(농정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 7) 2025. 12.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8) 2026. 1. : 거창군 건축협의 완료
- 9) 2026. 3. : 경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 10) 2026. 6. : 공사 착공
- 11) 2027.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1)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의 상생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제고
- 2) 거창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가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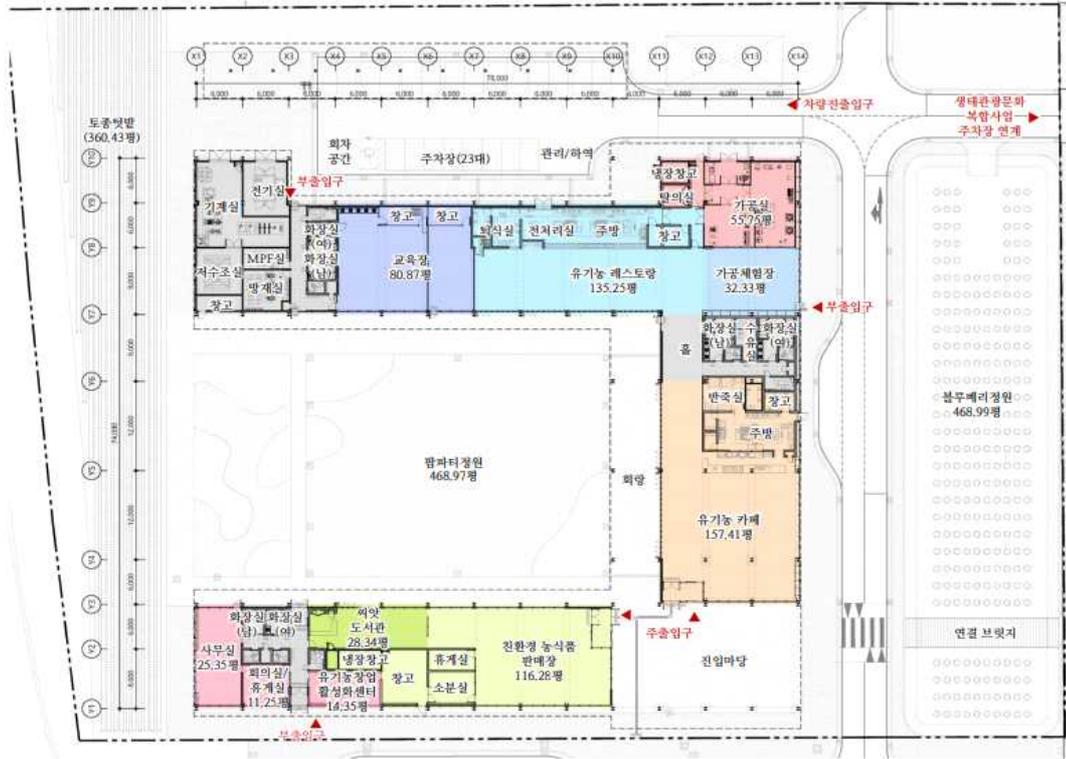


위 치 도(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조 감 도

나. 평면계획



평면 계획도



내부 시설(안)

붙임2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총계		18,000	
공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공사비(3,558.26㎡) : 14,493백만원 - 건축비 : 4,072,940원×3,558.26㎡ = 14,492,579,580원 * 건축단가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단위면적당 공사비 참고 (위 시설의 발주시점은 현재와 다르므로 건축단가에 건축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함) 	14,493	
설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 1,010백만원 - 설계비 : 863백만원* - 설계공모비용 : 70백만원 - 설계의도 구현관련 : 77백만원(설계비의 9.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 인증수수료 : 57백만원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20백만원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20백만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7백만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 감리비 및 건설사업관리 등 : 638백만원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운용 요령,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등 	1,705	
운영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 218백만원 - 관리운영계획 수립용역 : 53백만원 - F&B기획 및 운영 용역 : 28백만원 - 가공설비 선정 용역 : 40백만원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 97백만원 	218	
부대 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 용역비 : 144백만원 - 공공건축 심의용역 : 39백만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 56백만원 - 현황도면 제작용역 : 4백만원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 25백만원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20백만원 	144	
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비 : 1,440백만원 - 예비비 : 공사비+용역비+시설부대비의 8.7% 	1,44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민 4도3촌 체류시설 조성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신규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성단노을마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4도3촌 라이프 확산과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여가·영농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체류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위 치 :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등 6필지
 ※ 한기리 452-3, 915, 915-2, 923-1, 923-13, 1043-4
- 2) 사업기간 : 2025. 6. ~ 2027. 12. / 3년간
- 3) 대상지 면적 : 14,562㎡(정비면적 : 9,603.9㎡)
- 4) 사업내용 : 체류시설 총18호 조성(16호: 각호 면적 33㎡, 2호: 각호 면적 40㎡)
 공동시설 리모델링, 부대시설 조성 등
- 5)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 1,500, 도 450, 군 1,050)
 ※ 예산배정 :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
- 6) 주요내용 : 도시민의 농촌 체류·영농체험 시설조성

나. 취득재산 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1)기준가격	취득 시기	사업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형식)	면적				
취득	건축물	웅양면 한기리 915	건물 18동	608	2,129,700	2026 ~ 2027	단독주택 18호 신축 (33㎡ 16호, 40㎡ 2호)	신축

※ 1)기준가격 : 33㎡(115,931천원/호), 40㎡(137,400천원/호)

다. 추진경과

- 1) '25. 3. :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 '25. 5. : 국비(150백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 3) '25. 6. : 기본계획 수립 착수

라. 향후계획

- 1) '25. 8. : 공유재산 심의
- 2) '25. 8. ~ 11.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3) '26. 3. ~ '27. 11.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1) 체류시설 조성을 통해 우리군 생활·관계인구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 활력 증대 및 경제활성화
- 2) 도시민에게 농촌 체류 및 영농체험 기회 제공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도모

3. 관계법령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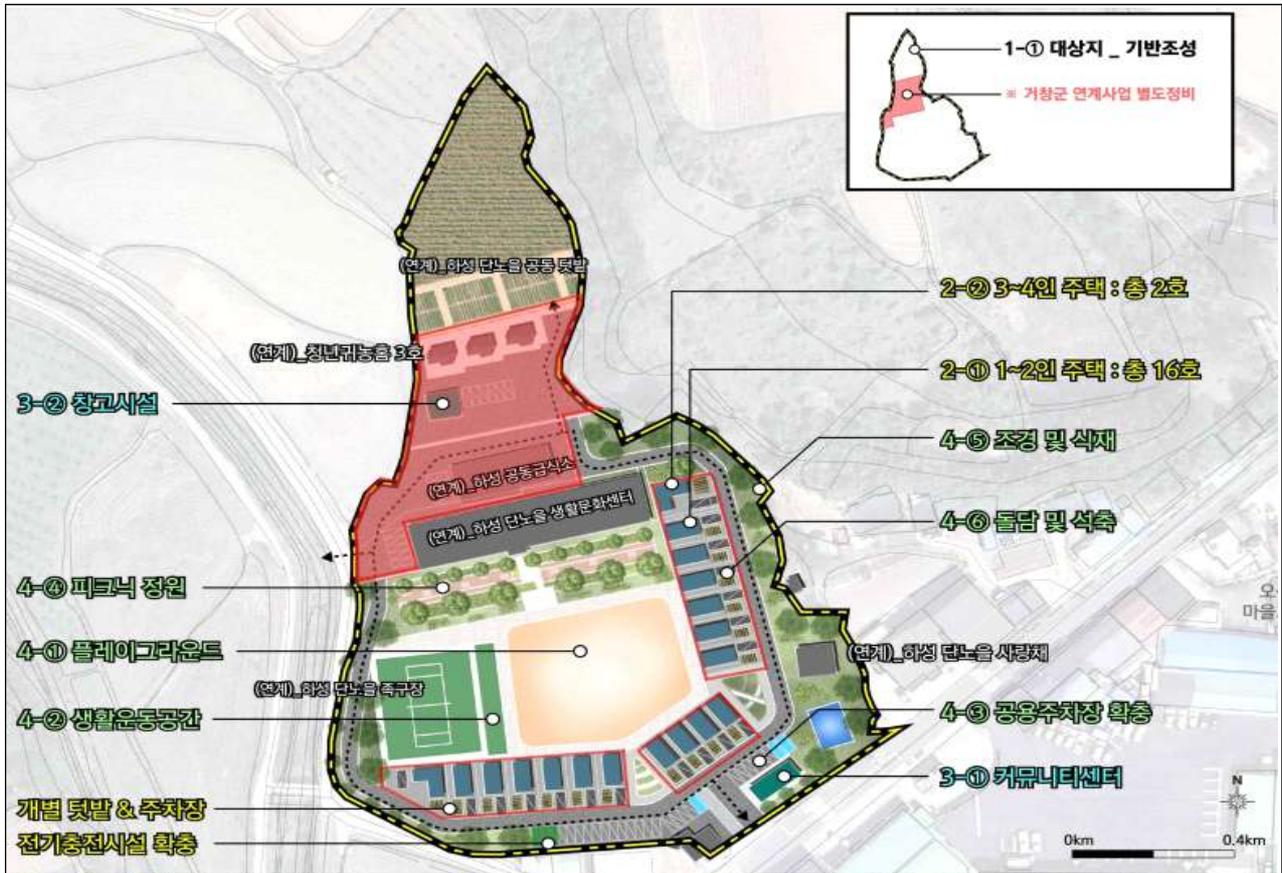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위치도(응양면 한기리 915번지 등 6필지)



지적도



사업계획도



33㎡ 단독주택 조성(안) / 16호 신축



40㎡ 단독주택 조성(안) / 2호 신축



개별텃밭(10㎡) 및 개별주차장(15㎡) 조성(안) / 호당 텃밭, 주차장 1식 포함



항 목		금 액 (백만원)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	- 기확보(취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 계	-	
B. 기반조성	사업대상지 기반조성	254.0	- 토목, 내부순환도로, 상하수도 등
	소 계	254.0	
C. 체류시설	1~2인용(33㎡/호)	1,854.9	- 115,931.25천원/호 × 16호
	3~4인용(40㎡/호)	274.8	- 137,400천원/호 × 2호
	소 계	2,129.7	
D. 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32.0	- 커뮤니티센터 내부 공간 구획 : 60㎡
	농기구 창고 리모델링	39.1	- 유희 창고 구조보강 등 : 39.4㎡
	소 계	71.1	
E. 부대시설	플레이그라운드 및 피크닉 정원 조성(휴게/편의), 생활운동공간 정비	126.5	- 플레이그라운드(운동장 치환) : 1,335㎡ - 피크닉 정원 : 703㎡ - 생활운동시설 : 6개 확충, 인조잔디 포장
	공용주차장 확충	6.8	- 일반 6면, 장애인 2면
	조경 및 식재, 담장 조성	166.9	- 차폐식재, 조경석 등
	소 계	246.8	
F. 부대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0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비
	세부설계비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비
	기타부대비	158.4	- 인허가, 감리비, 지역주민 벤치마킹 등
	소 계	298.4	
G. 총사업비		3,000	A+B+C+D+E+F

※ 사업비 내역은 예비계획서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변동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2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집중호우로 관내 다수 토지가 매몰·유실되는 등 재산상 피해 발생으로 생활 기반이 훼손된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생계 안정과 재산 회복 지원
- 나. 인근 지자체 피해 주민과의 세제지원 형평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피해개요

- 1) 피해지역 : 남상면, 신원면
- 2) 피해유형 :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부동산) 피해
- 3) 피해현황 : 농경지 197필지(매몰 143, 유실 49, 매몰·유실 5)

나. 감면사항

- 1) 감면세목 : 재산세(토지)
- 2) 감면대상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매몰유실 토지
- 3) 감 면 율 : 100%
- 4) 감면 추계액 : 1,752천원
※ NDMS에 입력된 피해 토지의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상 2025년 예상세액 산출
- 5) 감면기간 : 피해 발생 연도분 재산세(당해연도 1회 한정)
- 6) 감면방법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추가 감면

3. 참고사항 : 붙임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24.>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2018. 12. 24.>
- ③ 삭제 <2023. 12. 29.>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 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3. 12. 29.>

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특수교육-복지연계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2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 기관과 연계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나. 위탁참여인원 : 7명(예정)
-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 사업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업무 수행
 - 2)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3)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 라.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 바. 수탁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통합형 거점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교육 지원센터
-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1) 특수교육 기관에 소속된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기관이 가진 전문성으로 체계화된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도모 기대

나.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46~47, p.69~70

다. 향후계획

- 1)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월 임시회
- 2)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월
-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월 중

라. 소요예산(2026년 기준) : 49,171천원(국24,585, 도7,375, 군17,209)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과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도모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추진방법 :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 7명(예정)
 - ↳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사업 중 일부사업인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사업에 한하여 위탁 운영
- 사업비 : 49,171천원(국 24,585, 도 7,375, 군17,209)
 -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사업대상 : 2026년 기준 장애인인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한 시점부터 참여 가능



근무조건

- 근로내용 : 특수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 연계한 업무
 - ※ 도서관 사서보조, 환경정리, 기타 업무 보조 등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 근무시간 :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 월 561,680원(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 1인당 월561,680원, 운영비 월 23,690원



위탁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26. 1월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수탁대상 기관 : 특수교육 기관
 -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형거점학교, 전환교육지원센터
- 위·수탁 협약체결 : 2026. 1월 중



기대효과

-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로 통합·배치되어 직업현장실습과 동시에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수교육기관의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활용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가능

□ [참고자료] : 관계법령 등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반드시 모든 참여자의 사회보험(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함
 ※ 보험관련 문의 -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고용·산재 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다) 불용 예산 반납 :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

3-8.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가.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자체 직업수행	사업수행기관	
			민간수행기관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복지 일자리	참여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특수학교 등 ※ 필요시 시·군·구청에서 실시할 수 있음	
특화형일 자리	시각장애인 인사파견	×	대한인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나. 사업수행기관 모집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지자체별 일자리 배정인원, 기존 수행기관 수행 규모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 민간 수행기관 선정·관리

2)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배치기관 연계협약서(해당기관에 한함, [서식40]) 각 1부

III. 일자리유형별 사업운영

1. 일반형일자리, 2. 복지일자리, 3. 특화형일자리

Chapter 2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2-1. 사업수행

가. 사업수행기관

1)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 직결수행 또는 민간수행기관 수행 가능
 -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행 가능

2)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가) 시·도에서는 지역별 사업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

나)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특수교육관련기관(특수학교 등)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직접 수행 가능)
 ※ p.46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를 참고

참고 | 특수교육기관의 정의 및 종류

특수교육기관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항에 명시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지정 통합형 기성학교, 지역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전환교육지원센터 등을 의미함

① 특수학교: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

② 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급(초·중등교육법 제56조)

③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구,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

④ 통합형 기성학교: 장애학생에게 정상학생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제공 등 당해 지역 장애학생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

⑤ 전환교육지원센터: 졸업 후 장애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여, 해당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 운영되는 전환교육 전문기관

다.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1)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서식4]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

2)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을 재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기간 동안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선정 적정여부를 심사
 -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는 등 부적정한 운영 기관은 재선정 제외

3)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

4)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

5)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장과 사업 협약서[서식5] 작성 및 협약 체결

6) 시·도 또는 시·군·구청은 수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배치기관 확보의 적절성, 담당인력 투입의 적절성, 일자리배정인원 참여율,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

라. 선정 기관 준수 사항

○ 민간수행기관은 「협약서」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선정받은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성과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3-9. 사업실적 보고 및 관리

가.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 임금 등 보고

1) 사업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최초 등록 시, 회원가입 후 반드시 공문을 전산시스템 내 첨부(1주일 이내)해야 함
 ※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공문 전산시스템 첨부 후 1주일 이내

2) 최초 등록한 사업담당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전 '전산시스템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용(전산시스템 → 게시판 → 공지사항)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2-2. 직무배치

가. 주요직무

○ 사업수행기관은 복지일자리 세부직무 유형 및 배치기관을 참고하여 선정·추진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 자체 신규직무 개발 가능
 ※ 제시된 직무 외 자체개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협의

나. 배치기관

1) 사업수행기관은 지역사회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기관에 복지일자리 세부직무별 적합 배치기관을 개발하고 배치
 ※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직무에 적합한 외부 배치기관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포함) 총 배치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함

2)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하청 일가공 등의 작업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프로그램 등은 일자리 유형으로 수행할 수 없음

3) 사업수행기관이 판단 하에 비대면을 활용한 직무수행 및 근태확인 등이 가능한 직무에 배치된 경우 재택근무 가능

4)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자리 참여기회를 통한 일반시장으로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시장형 배치기관에 배치 가능
 - 배치기관별로 직접채용 계획이 있는 직무에 대해 채용계획서[서식30]를 징구해야 하며, 미채용 또는 중도해고 등 제출한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채용확인서 [서식31]를 징구하고 향후 1년간 배치를 제한함

거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5-12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우리 군은 친환경 농식품 판로 극대화와 거창창포원 먹거리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체험·교육을 하나로 연계한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을 구체화함에 따라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을 확장하는 『거창창포원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유기농복합단지 조성
- 2)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7. (6년)
- 4)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3,063.6㎡ / 건물연면적 : 3,558.26㎡(지상1층)
- 5) 사업비 : 18,000백만원(국 9,000, 도 2,700, 군 6,300)

나.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변경개요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계획관리지역 증 4,864.3㎡, 농림지역 감 4,864.3㎡
- 2) 유원지 확장 : 지정 A=43,136.0㎡ 변경 A=48,000.3㎡(증 4,864.3㎡)
※ 편입 필지 : 남상면 월평리 2265 등 6필지(4864.3㎡)
- 3)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 (시설신설) 편익시설(유기농복합단지) 신설
 - (시설폐지) 편익시설(에코힐링센터), 휴양시설(글램핑장) 폐지
 - (명칭변경) 특수시설(자연에너지학습관 → 치유센터) 명칭변경

다. 결정사유

- 1) 2023년 11월 유기농복합단지를 포함한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유원지)이 결정 변경되었으나, 유기농복합단지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 확장이 필요

※ 건축 층수 및 건축면적 : (당초) 3층, 1,800㎡ → (변경) 단층, 3,588.26㎡

- 2) 확장되는 구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유원지”시설결정 변경(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함

※ 농림지역은 유원지 시설 불가, 농업진흥지역(4,684.3㎡) 해제 필요

라. 그간 추진사항

- 1) 2022. 03. : 유기농복합단지 공모사업 선정
- 2) 2023. 10. : 유기농복합단지 기본계획 승인
- 3) 2023. 11. : 거창창포원 군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513호, 2023.11.16.)
- 4) 2023. 11. : 거창창포원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2023.11.30.)
- 5) 2024. 07.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 6) 2024. 09. : 제안설계 공모 선정 및 설계 착수
- 7) 2025. 03.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요청(도시건축과)
- 8) 2025. 07. : 군관리계획 입안 요청(미래농업과 → 도시건축과)
- 9) 2025. 08. :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

마. 향후 추진계획

- 1) 2025. 09. : 거창군 계획위원회 심의
- 2) 2025. 10. :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거창군 → 경상남도)
- 3) 2025. 12.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상남도 농정위원회 심의
- 4) 2026. 03.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5) 2026. 06. ~ 2027. 12. : 공사 시행 및 유기농복합단지 운영 준비

3. 참고사항

가. 편입토지 조서 : 붙임 1

나. 거창군 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안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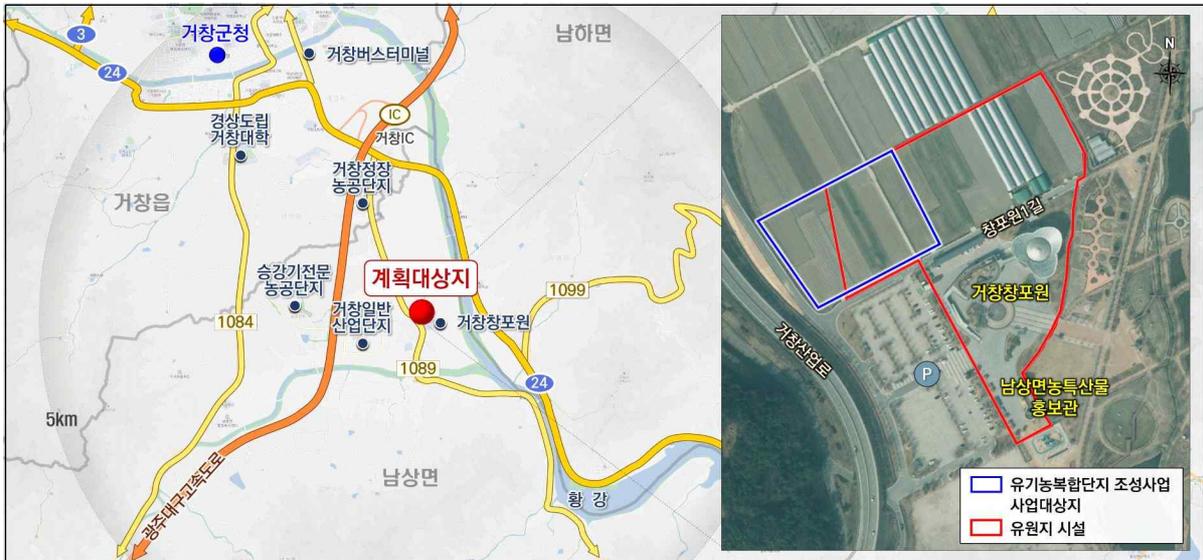
붙임1**편입토지 조서**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m ²)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총계			6,237.9	4,864.3	
1	남상면 월평리 2262	답	502.8	502.8	거창군
2	남상면 월평리 2263	답	1,271.1	1,271.1	거창군
3	남상면 월평리 2264	답	828.6	828.6	거창군
4	남상면 월평리 2265	답	1,667.0	1,430.6	거창군
5	남상면 월평리 2266	답	761.0	629.2	거창군
6	남상면 월평리 2267	답	1,207.4	202.0	거창군

1. 계획의 목적

- 가. 유원지 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3층에서 단층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축면적증가에 따른 유원지 시설 확장이 필요
- 나. 군계획시설(유원지) 변경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과 유원지 시설 확장에 따른 추가 편입구역의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계획을 추진하고자 함.

<입지여건>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대상지

- 1)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65번지 일원
- 2) 면 적 : 기정 43,136.0㎡ → **변경 48,000.3㎡(증 4,864.3㎡)**
- 3) 용도지역 : 기정 계획관리지역 (43.136.0㎡, 89.9%)
 기정 농림지역 (4,864.3㎡, 10.1%)
변경 계획관리지역 (48.000.3㎡, 100.0%)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04,144,882	-	804,144,882	100.0	
주거 지역	소계	4,878,158	-	4,878,158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6,022	-	3,126,022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
상업 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
공업 지역	소 계	1,565,584	-	1,565,584	0.2
	일반공업지역	1,537,142	-	1,537,142	0.2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
녹지 지역	소 계	25,409,121	-	25,409,121	3.2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
	생산녹지지역	7,651,048	-	7,651,048	1.0
	자연녹지지역	16,103,313	-	16,103,313	2.0
관리 지역	소 계	263,563,543	증) 4,864.3	263,568,407.3	32.7
	보전관리지역	173,201,156	-	173,201,156	21.5
	생산관리지역	8,356,452	-	8,356,452	1.0
	계획관리지역	82,005,935	증) 4,864.3	82,010,799.3	10.2
농림지역	467,676,441	감) 4,864.3	467,671,576.7	58.2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1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5-196호(2025.05.0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면적을 반영함

2)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남상면 월평리 2265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4,864.3	100%	• 거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군계획시설(유원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유원지 결정(변경)(안)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남상면 월평리 2308번지 일원	43,136.0	증) 4,864.3	48,000.3	거창군 고시 제2023-145호 (2023.11.30.)	

2) 유원지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정(변경)사유
1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지 확장 -면적 : 43,136.0㎡ → 48,000.3㎡ (증 4,8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 유기농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원지 변경

다.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유원지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안)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		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136.0	48,000.3	5,615.38	7,360.43	10,274.55	8,788.81	13	10	7	6	
유회시설	3,125.0	3,125.0	-	-	-	-	-	-	-	-	-
휴양시설	2,638.0	-	44	-	44	-	1	-	1	-	
특수시설	17,142.0	17,142.0	2,609.24	2,609.24	4,022.66	4,022.66	7	7	3	3	
편익시설	5,712.0	12,841.3	2,962.14	4,751.19	6,208	4,766.15	5	3	3	3	
관리시설	6,245.0	8,225.0	-	-	-	-	-	-	-	-	-
녹지 및 기타	8,274.0	6,667.0	-	-	-	-	-	-	-	-	-

2)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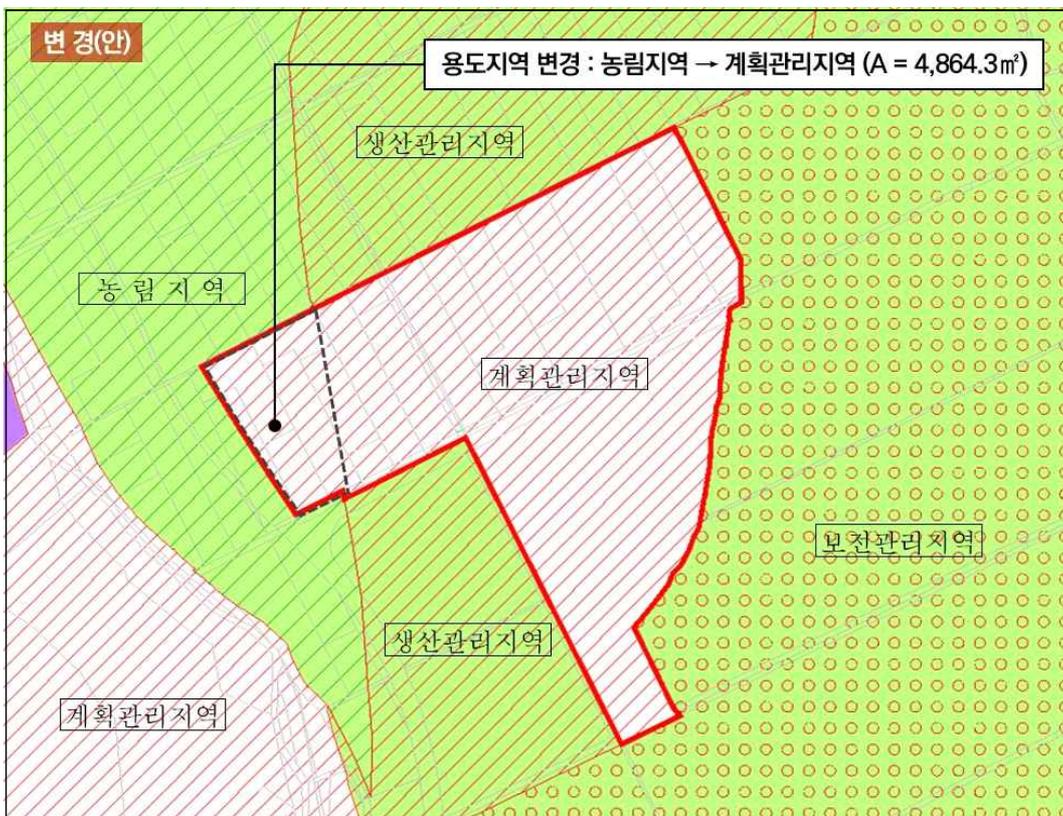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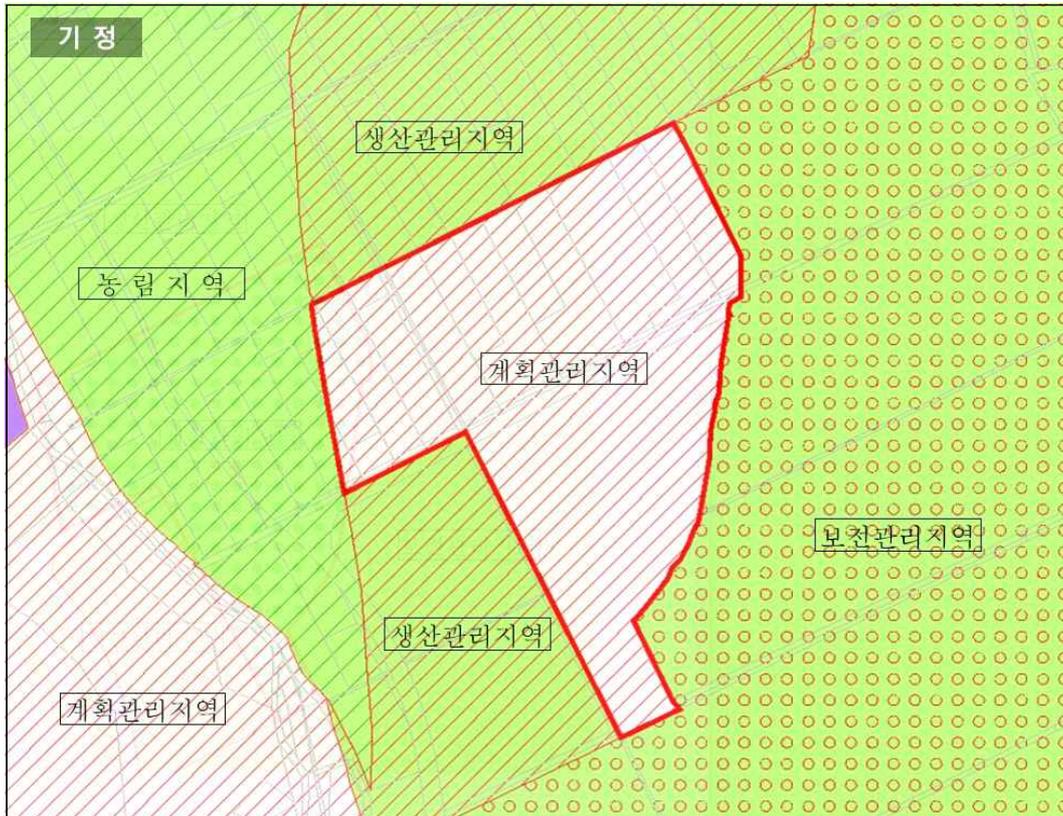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		동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3,136.0	48,000.3	5,615.38	7,360.43	10,274.55	8,788.81	13	10	7	6		
유회 시설	소계	3,125.0	3,125.0	-	-	-	-	-	-	-	-	
	다목적 놀이마당	3,125.0	3,125.0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2,638.0	-	44	-	44	-	1	-	1	-	
	글램핑장	2,638.0	-	44	-	44	-	1	-	1	-	
특수 시설	소계	17,142.0	17,142.0	2,609.24	2,609.24	4,022.66	4,022.66	7	7	3	3	
	열대식물원	1,377.0	1,377.0	1,617.73	1,617.73	1,709.13	1,709.13	2	2	1	1	
	커뮤니티광장	9,497.0	9,497.0	-	-	-	-	-	-	-	-	
	진입광장	159.0	159.0	-	-	-	-	-	-	-	-	
	야외공연장	3,737.0	3,737.0	-	-	-	-	-	-	-	-	
	창포문화관	1,962.0	1,962.0	698	698	1,745	1,745	3	3	1	1	
	치유센터	410.0	410.0	293.51	293.51	568.53	568.53	2	2	1	1	
편익 시설	소계	5,712.0	12,841.3	2,962.14	4,751.19	6,208.89	4,766.15	5	3	3	3	
	방문자센터	1,223.0	1,223.0	1,132.14	1,132.14	1,177.89	1,177.89	1	1	1	1	
	전시판매점	391.0	391.0	30	30	30	30	1	1	1	1	
	에코힐링센터	4,098.0	-	1,800	-	5,000	-	3	-	1	-	
	유기농복합단지	-	11,227.3	-	3,589.05	-	3,558.26	-	1	-	1	
관리 시설	소계	6,245.0	8,225.0	-	-	-	-	-	-	-	-	
	도로	1,514.0	2,777.0	-	-	-	-	-	-	-	-	
	보행자전용도로	1,164.0	1,164.0	-	-	-	-	-	-	-	-	
	주차장	3,567.0	4,284.0	-	-	-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8,274.0	6,667.0	-	-	-	-	-	-	-	-	
	녹지	8,274.0	6,667.0	-	-	-	-	-	-	-	-	

3)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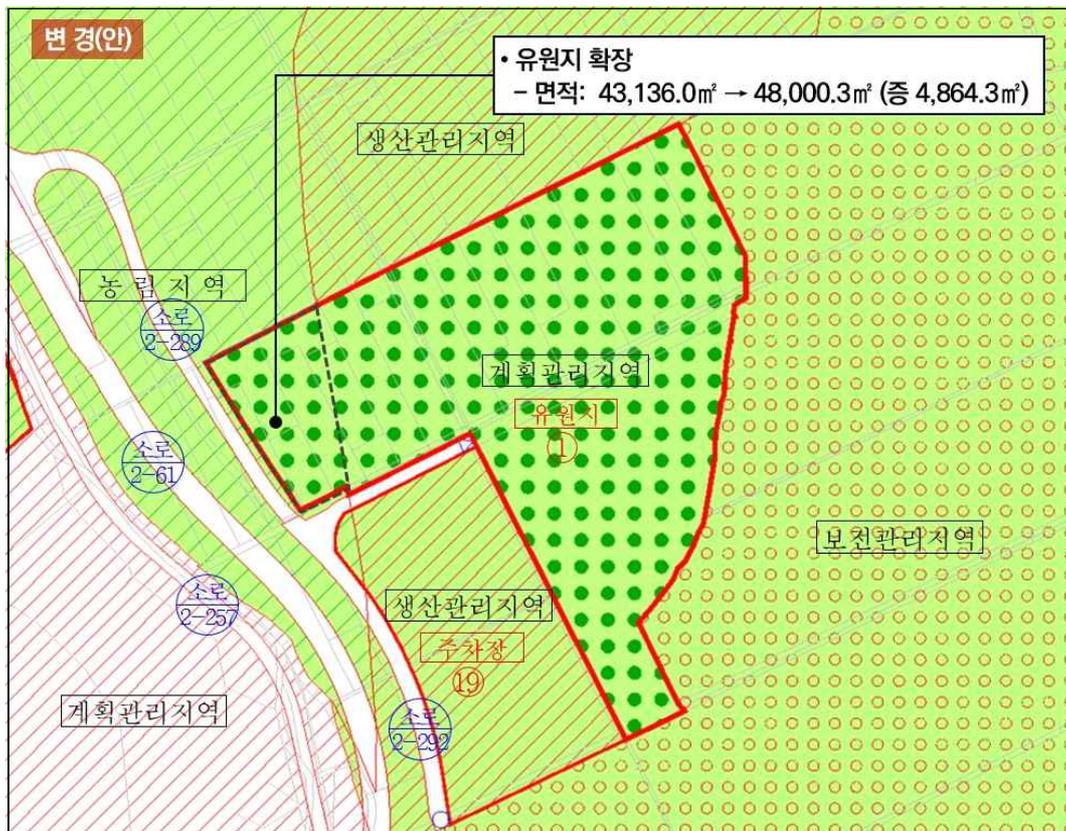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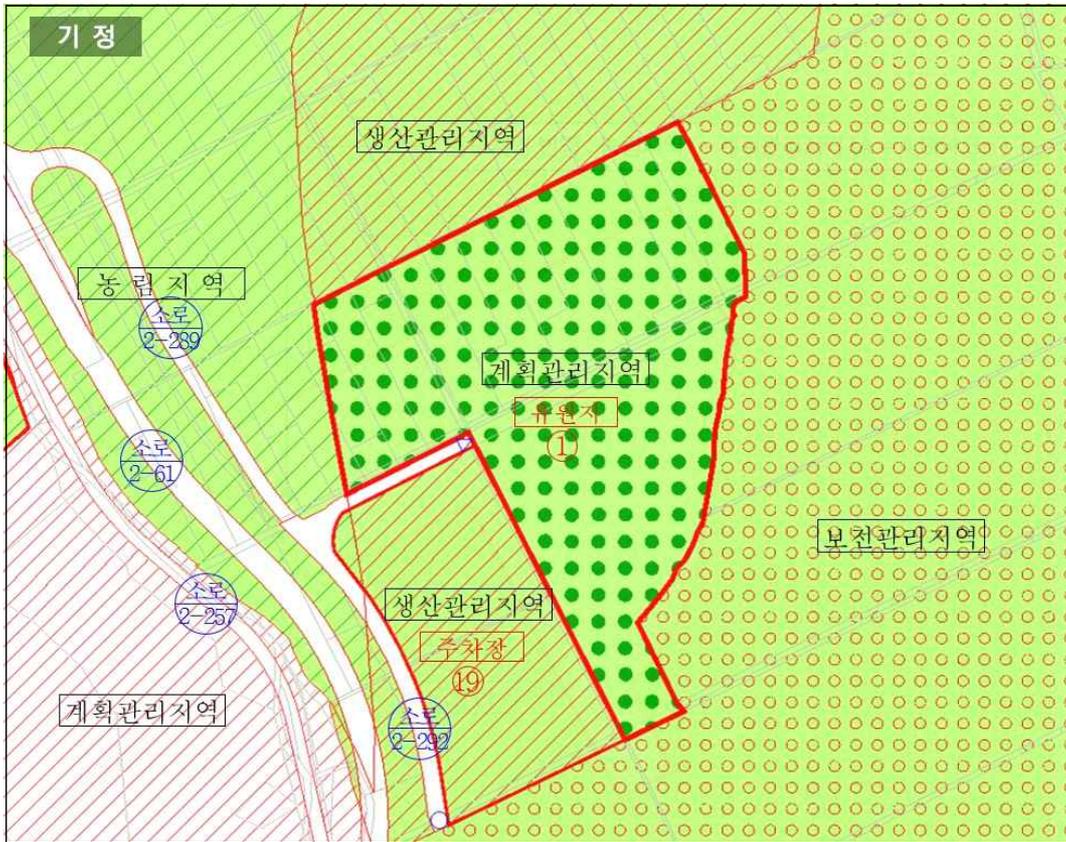
시 설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세부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유희시설	-	-	다목적 놀이마당	-	-
휴양시설	-	-	글램핑장	• 휴양시설용지(글램핑장) 폐지 - 2,638.0㎡→0㎡(감 2,638.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특수시설	-	-	열대식물원	-	-
	-	-	커뮤니티광장	-	-
	-	-	진입광장	-	-
	-	-	야외공연장	-	-
	-	-	창포문화관	-	-
	-	-	치유센터	• 시설 명칭 변경 - 자연에너지학습관 → 치유센터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편익시설	-	-	방문자센터	-	-
	-	-	전시판매점	-	-
	-	-	에코힐링센터	• 편익시설용지(에코힐링센터) 폐지 - 4,098.0㎡→0㎡(감 4,098.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	-	유기농복합단지	• 편익시설용지(유기농복합단지) 신설 - 0㎡→11,227.3㎡(증 11,227.3㎡)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관리시설	-	-	도로	• 관리시설용지(도로) 면적변경 - 1,514.0㎡→2,777.0㎡(증 1,263.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	-	보행자전용도로	-	-
	-	-	주차장	• 관리시설용지(주차장) 면적변경 - 3,567.0㎡→4,284.0㎡(증 717.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녹지 및 기타	-	-	녹지	• 녹지 및 기타시설용지(녹지) 면적변경 - 8,274.0㎡→6,667.0㎡(감 1,607.0㎡)	• 유원지 확장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4.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유원지)결정(변경)(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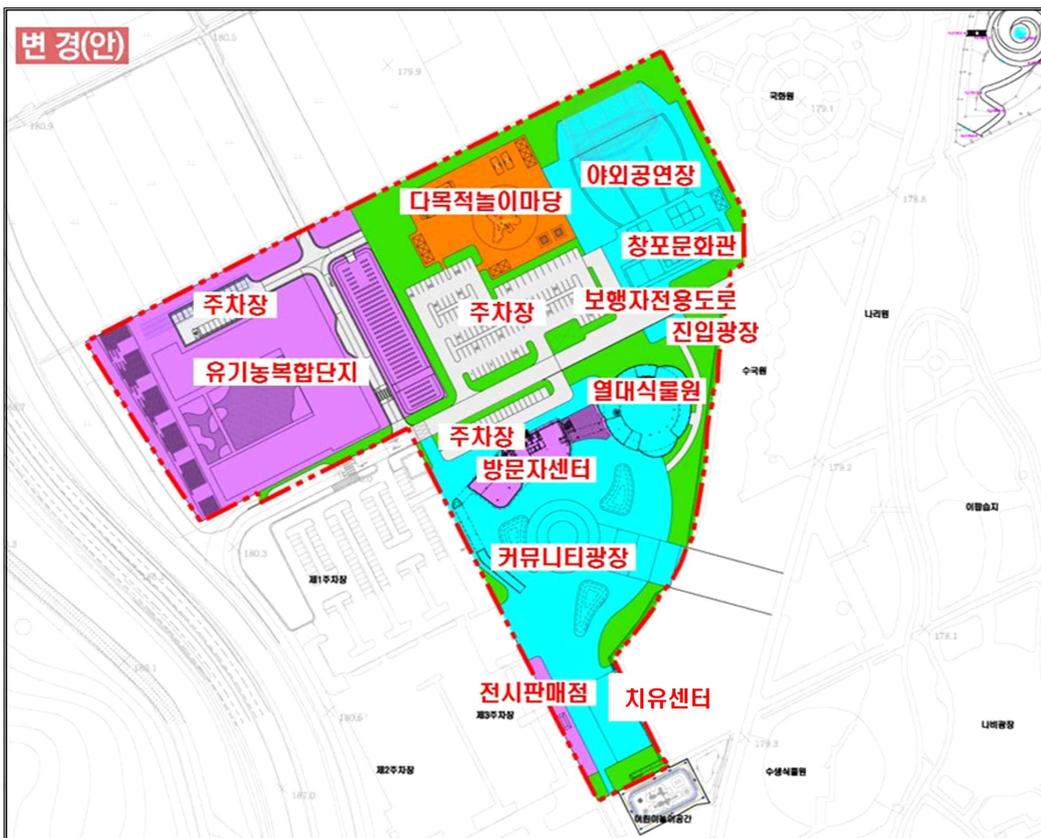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면



나. 군관리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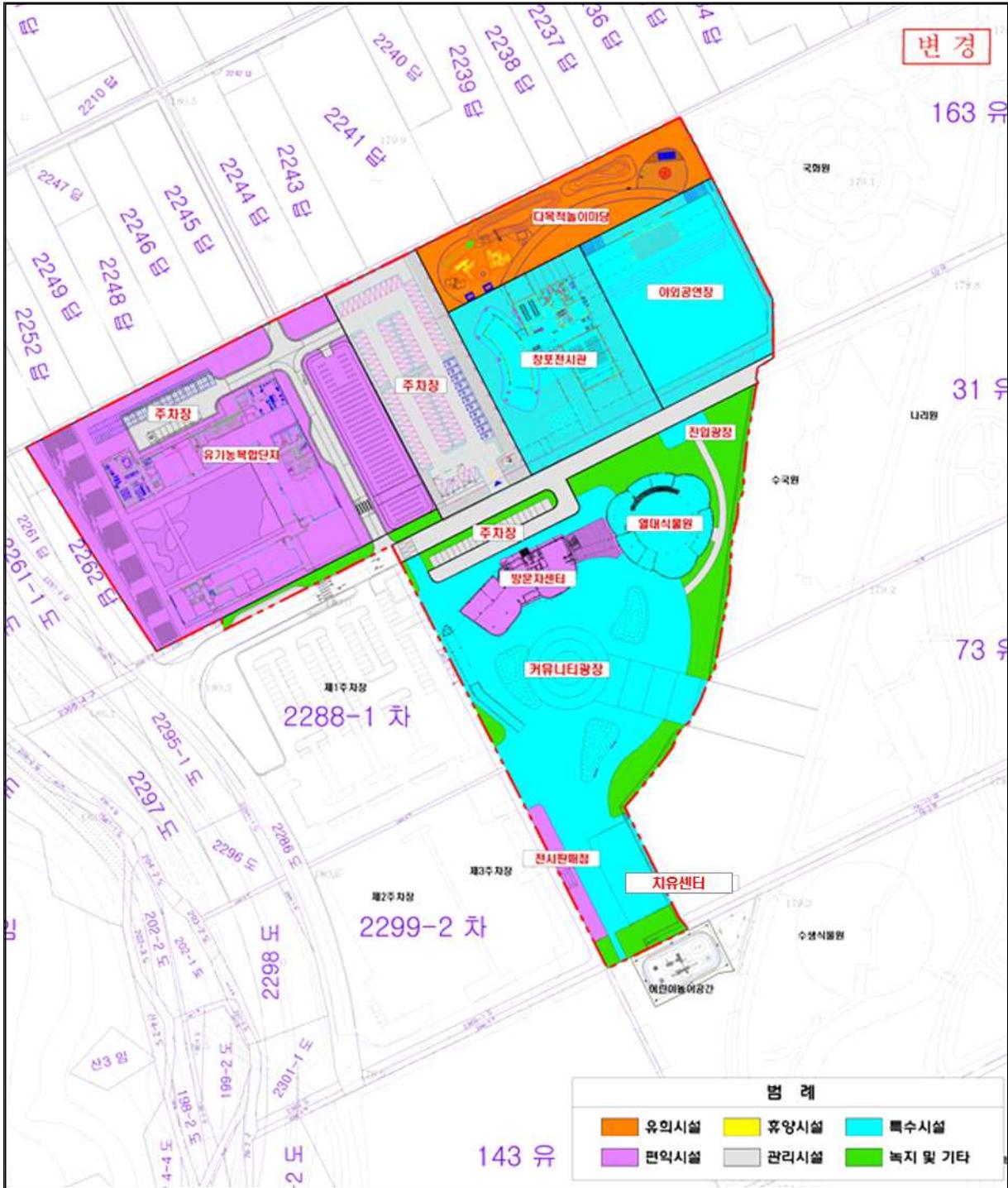


다.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면



라. 군관리계획(유원지) 총괄 변경(생태관광문화복합단지 실시계획 인가 반영)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 - 생태관광문화복합단지 및 유기농복합단지 변경 총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

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 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사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3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1)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2)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 3) 규 모 : 2,833m²
 - 천적생태과학관 : 1,040m²(지하 1층, 지상 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과학관 시설물, 전시시설, 주변 조경 유지 및 관리
 - 천적곤충 교육·체험·전시·홍보 기획 및 운영
 - 천적곤충 표본 제작 및 천적 연구
 - 천적 생산 및 농가 공급, 기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
- 2)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3) 위탁예산 : 연간 240,000천원 정도(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미포함)
※ 2023년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재산정 예정
-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유사시설 경력, 운영 능력 등 전반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사항

- 1) 2011. 10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
- 2) 2012.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3) 2013. 9월 : 천적곤충 생산 · 공급 개시
- 4) 2016.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5) 2019. 2월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전시개선사업(리모델링) 준공
- 6) 2022. 10월 :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도입
- 7) 2023. 12월 : 거창군 협력 농촌진흥청 ‘천적 관계도’ 책자 발간
- 8) 2024. : 신화속의 곤충전 등 특별전시회 개최(5회)
- 9) 2025. 8월 : 국립농업박물관-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협력전시회 개최

라. 향후 추진일정

- 1) 2025. 9월 : 민간위탁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 2025. 10월 ~ 11월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심의위원회)
- 3) 2025. 12월 : 협상 및 협약 체결
- 4) 2025. 12월 : 인계 · 인수 및 고시

3. 동의(승인) 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3)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나. 동의(승인내용)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

4. 참고사항

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1

나. 운영원가 산출내역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I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II 시설개요

- 시설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2012.1.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위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정장공원 부지 내
- 규모 : 2,833m²
 - 천적과학관 : 1,010m²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6동 1,530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m²

III 위탁운영 현황

- 위탁현황

위탁 기간	선정 방식	위탁사무	수탁자
2011.10.25. ~ 2013.11.30.(2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과학관 운영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이사 : 구덕서)
2013.12.01. ~ 2016.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2017. 1. 1. ~ 2019.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2020. 1. 1. ~ 2022.12.31.(3년)	협상에 의한 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이사 : 구덕서)
2023. 1. 1. ~ 2025.12.31.(3년)	재계약	과학관 운영 천적생산공급	

○ 2023 ~ 2025년 운영 위탁금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위탁금	225,000	240,000	249,500	인건비, 운영비 등

* 2023년~2032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 상승률 반영

** 공공운영비, 천적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미포함

○ 인력현황 : 4명

분 야	운영 총괄	회계·시설관리	교육·체험	천적 생산
인 원	1명	1명	1명	1명
직 무	과학관 운영 및 천적생산 총괄	회계업무 및 시설관리	체험프로그램 기획 과학관 안내·해설	천적생산 및 공급

○ 운영실적

① 방문객 : '23년 대비 '24년 153%

구 분	2011~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8월 5일기준
인 원(명)	176,802	8,839	13,347	20,387	9,333

② 천적공급 : '23년 대비 '24년 177% * 2013~2019년 : 천적 무상공급

구 분	2013~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공급량(병,120ml)	59,670	3,211	2,508	4,443	1,855
농가수(명)	1,337	10	20	40	13

IV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이후 1회 재계약(갱신) 가능

○ 위탁범위

- 시설운영 : 과학관,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 관련 시설물 관리
- 전시운영 : 천적교육, 전시·홍보, 전시물의 기획, 유지보수 등
- 천적생산 : 해충방제용 천적곤충 생산, 농가 공급 및 교육

○ 운영 위탁금 : 연간 240,000천원 정도

- 공공운영비, 천적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자체예산 편성

- 2023년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위탁사무 범위 및 위탁 운영비 재산정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자 자격

- 과학관(유사시설) 구축이나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천적 연구업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으로 기획, 운영하며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V 그간 추진경과

- 2011년 10월 : 천적생태과학관 준공 및 개관(24억원)
- 2012년 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3년 2월 : 천적생산 온실 3동(804㎡) 준공
- 2013년 9월 : 천적 생산 공급 개시
- 2014년 2월 : 곤충체험 유리온실 1동(263㎡) 준공
- 2015년 2월 : 천적생산 온실 1동(240㎡) 준공
- 2016년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 2017년 10월 : 제7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최우수 논문상 수상
- 2018년 1월 : 천적생산 온실 2동(486㎡) 준공
- 2019년 2월 : 천적생태과학관 리모델링 준공(2억)
- 2020년 4월 : 천적 유상공급 전환(친환경농가 무상)
- 2021년 : 한국과학관협회 전시콘텐츠 개발사업 선정(2.5억원)
- 2022년 : 한국과학관협회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0.9억원)
- 2022년 10월 : 증강현실(AR) 체험 프로그램 도입
- 2023년 3월 : 천적 특허 등록 2건
 - ※ 애뫼털이진딧물의 천적연구개발 및 천적이용 친환경 딸기 재배법
- 2023년 12월 : 거창군 협력 농촌진흥청 ‘천적 관계도’ 책자 발간
 - ※ 응애류, 진딧물류, 복숭아순나방 등 주요 해충 13종의 먹이사슬 관계도 표시
- 2024년 : 특별전시회 개최 5회
- 2025년 8월 : 국립농업박물관-거창천적생태과학관 협력전시회

VI 향후계획

- 2025. 7.~ 8.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 2025. 9. : 민간위탁운영 군의회 동의
- 2025. 9. : 수탁기관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2025. 10.~ 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선정
- 2025. 12. : 협상 및 협약체결
- 2025. 12. : 인계·인수 및 고시

VII 기대효과

- 천적생태과학관의 운영을 전문화하고 지역 과학 문화 확충
- 안정적인 천적생산을 통한 천적활용 저탄소농업기술 보급

붙임2

운영원가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구성비	산출내역(기초)					
1.인건비	급여 1	55,356	68.25%	4,613천원×12월=55,356천원				
	급여 2	38,004		3,167천원×12월=38,004천원				
	급여 3	28,908		2,409천원×12월=28,908천원				
	급여 4	28,908		2,409천원×12월=28,908천원				
	소 계	151,176						
	퇴직연금 1	4,632		392천원×12월=4,632천원				
	퇴직연금 2	3,180		265천원×12월=3,180천원				
	퇴직연금 3	2,412		201천원×12월=2,412천원				
	퇴직연금 4	2,412		201천원×12월=2,412천원				
	소 계	12,636						
합 계	163,812							
2.경비	인적보험료	12,055	5.02%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산재
				근로1	208	185	0	0
				근로2	142	127	36	23
				근로3	22	96	6	18
				근로4	22	96	6	18
	계(12개월)	4,721	6,048	570	712			
	복리후생비	6,240	2.60%	130천원×4인×12개월 = 6,240천원				
	재료비	13,000	5.42%	5,000천원×기획전시 2회 = 10,000천원 250천원×체험재료 12개월 = 3,000천원				
	통신비	792	0.33%	66천원×12개월 = 792천원				
	우편료	100	0.04%	100천원×1식 = 100천원				
	소모품비	6,900	2.87%	음료,복사용지,사육소모품,문구류,화장지, 종이컵, 소규모수선, 기타				
홍보광고비	1,000	0.42%	플랭카드, 전단지등					
여비교통비	1,000	0.42%	각 협회 회의등의 출장, 채집등의 비용					
지급수수료	6,000	2.50%	공인인증수수료, 영조물 배상보험, 주민세, 회계수수료, 소방안전관리회, 퇴직연금수수료, 홈페이지관리비, 카드연회비, 과학관 협회비 등					
도서인쇄비	300	0.12%	스탬프, 기념품 인쇄 등					
경비합계	47,387	19.74%						
순원가	211,199	88.0%	인건비 + 경비					
3. 일반관리비(6%이내)	6,983	2.90%	순원가 × 3.3%					
4. 이윤(10%이내)	-	0.00%	미산정					
운영원가	218,182	90.9%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5. 부가가치세(10%)	21,818	9.10%	운영원가 × 10%					
총 운영원가	240,000	100%						

※ 2023~2032년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에 근거함. 물가상승률 반영시 변동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전부개정 2021.7.7.)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3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지애플(G-APPLE)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 나. 재계약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안정성 유지 등 거창사과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 1) 시 설 명 : 지애플(G-APPLE)
- 2)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 3) 규 모 : 999.12㎡(1층 535.13㎡, 2층 463.99㎡), 철골구조

구 분	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999.12	-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 2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옥외휴식공간 등	

- 4) 수탁자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운영인력 : 8명(대표 1, 직원 7)
- 5)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2년 2개월)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6) 위탁사무 : 지애플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세부사업 : 사과관련 가공(음료·빵·식사), 판매, 체험 운영 등

7) 위탁지원금 : 없음

- 2023년 : 20,000천원 / 2024년 : 26,697천원 / 2025년 : 0원
-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이며, 운영 초과수익 발생 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심의 후 결정 가능함)

※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비용 산정용역 결과('22. 8.)에 따른 위탁운영비 산출 : 운영초기(2년) 적자 예상, 3년차 부터 흑자 운영 예상

나. 그간 추진현황 및 계획

- 1) 2022. 10. : 지애플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2) 2023. 1. ~ 8. : 위탁운영 실시(농업회사법인영클팜)
- 3) 2023. 8. ~ 9. :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주체 공모 및 선정
- 4) 2023. 10. 26. ~ 현재 : 위탁운영 실시(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
- 5) 2024. 2.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전환
- 6) 2024. 7. : 식사류 신메뉴 개발(사과비빔밥, 사과돈가스, 사과국수)
- 7) 2025. 8. 6. : 재계약 적정성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 평가점수 : 84.6점(정량평가 25점 + 정성평가 59.6점)

- 8) 2025. 9. :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군의회 동의 요구
- 9) 2025. 10. ~ 12. : 계약철차 진행

3. 참고사항

가. 지애플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재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1, 2

나. 관계법령 : 붙임 3

- 1) 「공유재산법」 제27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제9조
- 4)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붙임1

지애플(G-APPLE)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시설명 : 지애플(G-APPLE)
- 시설위치 : 거창읍 거합대로 3372, 푸드종합센터 옆
- 시설규모 : 999.12㎡(1층 535.13㎡, 2층 463.99㎡), 철골구조

구분	면적(㎡)	용도	비고
합계	999.12	-	철골구조
1층	535.13	사과제품전시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	1, 2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일반음식점)
2층	463.99	휴식, 체험, 교육 공간, 옥외휴식공간 등	

- 수탁자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운영인력 : 8명(대표 1, 직원 7)
-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 (2년 2개월)
- 위탁지원비용 : 46,697천원
 - ※ 2023년 : 20,000천원 / 2024년 : 26,697천원 / 2025년 : 지원금 없음
- 위탁내용 : 지애플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 세부사업 : 사과관련 가공(음료·빵·식사), 판매, 체험 운영 등
- 운영실적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영클팜 (2023. 2. 9.~8. 20)	월천권역 (2023. 10. 26 ~ 12. 31)	월천권역	월천권역
매출액(천원) *부가세 제외	207,037	45,578	497,291	348,017
방문객(명)	20,000	5,693	57,013	38,588

- 세부실적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 10.~12.	2024. 1.~12.	비고
매출액(A)	542,869	45,578	497,291	부가세 제외
매출원가(B)	546,915	62,929	483,986	
위탁지원금(C)	46,697	20,000	26,697	
매출이익(A-B+C)	42,651	2,649	40,002	세무사 발행 재무대표기준

□ 심의개요

- 일 시 : 2025. 8. 6.(수)
- 장 소 : 미래농업복합교육관 2층 소교육장
- 심의안건 : 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연장) 적정성 심사
 - 위탁연장대상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
 - 기 위탁기간 : 2023. 10. 18. ~ 2025. 12. 31.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조건
 - 가.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나. 운영 초과수익 발생 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위탁기간 종료 후 심의 후 결정함
 - 다. 기타 종전과 계약내용 동일
- 심의위원 : 7명

구분	성명	소속	직급	비고
1	김규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2	이창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3	신미정	거창군의회	군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4	김우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연구소	소장	
5	조철효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6	정순경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7	유영재	해플스팜사이더리	대표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월천권역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오)의 지애플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연장) 적정함
- 평가점수 : 84.6점(정량평가 25점 + 정성평가 59.6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의회 동의)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9조(협약체결 등)

-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
1. 거창사과 생산·유통·가공·출하 관련기관·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5 - 13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과 수형별 재배 교육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민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함.
- 나. 이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 세부내용 [붙임3]

연번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시설내용	비 고
		소재지	면적(m ²)		
합계			45,356.2		
1	토지	고제면 봉계리 525-1	19,874	사과원	
2		고제면 봉계리 521	1,379	사과원	
3		고제면 봉계리 522	1,534	사과원	
4		고제면 봉계리 525-3	358	창고용지	
5		고제면 봉계리 524-2	2,321	자연학습장	
6		고제면 봉계리 산 157-6	17,183	산나물체험장	
7		고제면 봉계리 520	251	산나물체험장	
8		고제면 봉계리 526-2	2,188	생태소류지	
9	건물	고제면 봉계리 525-2	207	관리동	
10		고제면 봉계리 525-3	61.2	창고	내부 저온창고 10m ²

- 나. 민간위탁 내용

1) 위탁대상 업무

- 위탁 재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사과 다축과원 조성 및 시범포 운영 등

2)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4년 7개월)

3) 재계약 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4) 재계약 기준

- 수탁자의 적정성,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
-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다. 추진경과

- 1) 2021. 5. 31. ~ 2025. 12. 31. : 고제면 주민자치회 위탁 운영
- 2) 2021. ~ 2024.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연 1회)
- 3) 2022. ~ 2024. : 다축과원 조성(1.35ha) ※ 후지(2축) 0.6ha, 감홍(구요) 0.75ha
- 4) 2025. 8. : 민간위탁사무 자체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평가점수 : 80.75점(정량평가 24.75점 + 정성평가 56점)
 -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함 원안 가결

3. 향후 추진일정

- 가. 2025. 10. ~ 12. 계약절차 진행
- 나. 2026. 1. ~ : 위탁업무 개시

4. 참고사항

- 가. 추진계획 : [붙임1]
-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 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 [붙임4]
- 라. 관계법령 : [붙임5]
 - 1)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22조, 제23조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1 근거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제23조(성과평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도감독보고)

2 위탁운영 현황

- 시설명 : 거창사과테마파크(고제 봉계) 교육장
- 시설위치 :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시설규모 : 45,356.2㎡(관리동 207.36㎡, 창고 61.2㎡)

연번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시설내용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45,356.2		
1	토지	고제면 봉계리 525-1	과	19,874	사과원	
2		고제면 봉계리 521	전	1,379	사과원	
3		고제면 봉계리 522	전	1,534	사과원	
4		고제면 봉계리 525-3	창	358	창고용지	
5		고제면 봉계리 524-2	답	2,321	자연학습장	
6		고제면 봉계리 산 157-6	임	17,183	산나물체험장	
7		고제면 봉계리 520	임	251	산나물체험장	
8		고제면 봉계리 526-2	유	2,188	생태소류지	
9	건물	고제면 봉계리 525-2	원	207	관리동	
10		고제면 봉계리 525-3	창	61.2	창고	내부 저온창고 10㎡

※ 파크골프장 :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고제면으로 이관하여 관리

- 수탁자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
-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4년 7개월)
- 위탁내용 : 다축과원 조성·시범포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 운영인력 : 5명(회장 1, 회원 4)

3 추진계획

- 2025. 12. 31. 위탁기간 만료로 관련법령에 의거 1회 연장 가능(5년)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부서검토(안)

검 토 항 목	부 서 의 견
위탁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4년 다축과원 1.35ha 조성 - 후지 2축 0.6ha(2022년 식재), 감홍 구요 0.75ha(2024년 식재) ○ 기존 다축과원 갱신으로 인한 안정적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연장계약 필요 ○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4 성과평가 세부계획

- 기 간 : 2025. 8. 11.(월) ~ 8. 12.(화) / 2일간

- 장 소 :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 평 가 자 : 2명(과수담당주사, 담당자)

○ 평가내용

가. 평가범위 : 2025. 1. 1. ~ 2025. 7. 31.

※ 2021년~2024년 : 매년 1회 성과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

-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및 성과목표의 적정성
- 인력배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 위탁시설 관리 및 내·외부 위생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지도·감독·감사 병행 실시(붙임2 평가표)

다.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 의견청취 등

5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일 시 : 2025. 8. 20.(수)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본관 소회의실
- 심의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 등 6명
- 심의방법 : 발표평가에 의한 정성평가
- 평가내용
 - 대상기간 : 2021. 5. ~ 2025. 8.
 - 세부내용 :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6 향후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25. 8. 11. ~ 12.
- 성과평가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025. 8. 13.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2025. 8. 18. ~ 20.
- 의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제출, 의결 : 2025. 8. ~ 9.
- 민간위탁 재계약 : 2025. 10. ~ 12.

7 기대효과

- 사과 다축과원 수형별 교육장 활용으로 관내 농가 보급률 확대
- 다축과원 농가 인지도 향상 및 농가 확대 보급 기여

거창사과테마파크 고제 교육장 안내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3

위탁 세부현황

-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
- 위탁자 : 고제면주민자치회(대표 : 채한식)
- 운영인력 : 5명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운영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총괄관리자	채한식	회장	총괄관리자	채한식	회장
관리자	홍석민	간사	관리자	김동영	회원
	김민경	총무		하선기	회원

- 임대료 : 연간 2백만원 내외 / 공유재산법 대부료 기준
- 위탁조건
 - 사과 다축 과원 조성·운영이 가능한 자
 - 위탁대상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며 아래 항목에 의거하여 수행

구분	수탁자	거창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축과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과 과원 갱신('24년까지 순차적 갱신) - 과원 조성비용 20% 부담 ● 다축과원 시범포 운영('22. 5. ~ '2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 - 운영결과 보고(매년 12월 사용료 정산시) ● 과원운영(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과원 경영 계획 수립 ● 시설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작업 등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관리 - 공원시설, 건물 등 목적 외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축과원 및 시범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원조성 현장 점검 - 시범포 운영 만족도 조사 ● 과원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현장 견학 및 교육계획 수립 - 사과 과원 운영 현장 점검 ● 시설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시설, 건물 등 목적 외 사용여부 확인 - 100만원을 초과하는 개보수 공사비 지원

- 과원의 생산량 보전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재해보험비 수탁자 부담)
- 위탁재산 공제회비 납부(공제회비 수탁자 부담)
- 시설의 개·보수비 중 우리 군에서 심사 결정한 비용 지원
- 수탁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준수
- 선정된 수탁자는 거창군이 제시하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

○ 그간 위탁운영 현황

운영기간	수탁자	범위	재정운영현황(원)		
			년도	소득	임대료
'09년 ~'11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전체과원위탁	2009	무	없음
			2010	무	없음
			2011	무	6,600,000
'12년 ~'14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사과·오미자과원 부분관리위탁	2012	23,279,047	7,000,000
			2013	24,827,873	7,450,000
			2014	19,849,830	5,950,000
'15년 ~'17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5	34,833,950	10,450,000
			2016	31,449,133	9,434,740
			2017	78,314,794	10,964,070
'18년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전체관리위탁	2018	61,732,240	8,642,510
			2019	93,807,698	13,133,070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홍로과원 위탁	2020	11,576,700	1,620,730
	(주거창한과머스농업법인)	홍로과원을 제외한 전체관리 위탁		25,355,088	3,549,710
'21년	고제면주민자치회 (대표 채한식)	전체관리 위탁	2021	5,288,300	1,219,000
'22년			2022	무	2,102,900
'23년			2023	무	1,951,190
'24년			2024	무	1,914,198

붙임4**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재계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 심의개요**

- 일 시 : 2025. 8. 20.(수) 16:00 ~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본관 소회의실
- 심의안건 :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 위탁연장대상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
 - 기 위탁기간 : 2021. 5. 31. ~ 2025. 12. 31.
 - 재계약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조건
 - 가. 위탁운영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 원칙
 - 나. 기타 종전과 계약내용 동일
- 심의위원 : 7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7명	
1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규태	당연직
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장	최남미	당연직
3	거창군의회	군 의 원	신재화	군의회 추천
4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사과연구소	소 장	김우일	
5	사과발전협의회	회 장	정창현	
6	거창사과실무추진단	실 무 위 원	이응범	
7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과수 전문위원	신을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고제면 주민자치회(대표 채한식)의 거창사과테마파크 교육장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함
- 평가점수 : 80.75점(정량평가 24.75점 + 정성평가 56점)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 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지도·감독·보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3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도력과 선수육성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우수 선수 발굴과 학교 간의 연계, 학교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거창군 전략종목을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나. 위탁내용

1) 엘리트운동부 대회참가비, 훈련비, 인건비 등 지원

2) 대상종목

- 배드민턴 : 3개교(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교)

- 역도 : 2개교(대성중, 대성일고)

- 사격 : 6개교(혜성여중, 거창여중, 대성중, 거창중, 아림고, 중앙고)

- 육상 : 4개교(거창중, 거창여중, 아림고, 거창대)

- 축구 : U-18 축구팀 2개교(중앙고, 대성일고)

※ 지원 종목은 학교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다.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 (3년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3. 추진일정

가. 거창군 의회 일반의안 제출 : 2025. 8.

나. 거창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9.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실시 : 2025. 9.

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0.

마.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5. 12.

3. 참고사항

가.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제8조(경비의 지원)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민간위탁 기간(2025.12.31.)이 만료됨에 따라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등

II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
- 위탁사무 : 엘리트운동부 육성사업(대회참가비, 훈련비, 인건비 등)
 - 배드민턴 : 3개교(창남초, 거창중, 거창승강기고)
 - 역 도 : 2개교(대성중, 대성일고)
 - 사 격 : 6개교(혜성여중, 거창여중, 대성중, 거창중, 아림고, 중앙고)
 - 육 상 : 4개교(거창중, 거창여중, 아림고, 거창대)
 - 축 구 : U-18 축구팀 2개교(중앙고, 대성일고)
- ※ 지원 종목 및 학교는 운동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간)
- 위탁예산 : 매년 400백만원 정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의계약
- 적절성 검토결과
 - 체육훈련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적절함

○ 현 위탁현황

- 위탁기관 : 사단법인 거창군체육회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예산지원액

(단위:천원)

구 분	2023	2024	2025
예산액	330,000	360,000	398,472

Ⅲ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8.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5. 9.
-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 2025. 9.
-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5. 10.
 - 구성인원 : 6~9명(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부군수, 관련공무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 임 기 : 심의 후 자동해산(비상설기구)
-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5. 12.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2021. 4. 28.)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2023.11.29.)
11.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호신설 2025.7.9.)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5-134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계약이 2025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관리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다.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웬스시설
12면	6면 (전천후)	6면 (옥외)	1층 140.55㎡	타워조명 실내투광등	7,829㎡



라. 위탁기간 : 2026. 1. 1.~ 2028.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바. 수탁자격 :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3. 추진일정

- 가.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5년 8월
- 나. 수탁자 선정 관련 공개모집 : 2025년 10월
- 다. 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11월
- 라. 위수탁계약 체결 : 2025년 12월
- 마. 위탁계약 운영 : 2026년 1월 ~

4.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 붙임1
- 나. 관계법령 : 붙임2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 2)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4)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제23조 (관리위탁)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위탁기간 만료(2025.12.31.) 도래에 따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3조

II 추진배경

-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거창군 테니스 진흥 및 활성화 효과 증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생활체육 시설 저변에 기여하고자 함.

I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투명성 확보
-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정

IV

위탁개요

위탁기간 : 2026. 1. 1.~ 2028. 12. 31.(3년)

위탁현황

○ 대 상 : 거창군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시설물 현황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전천후)	6면 (옥외)	1층 140.55㎡	타워조명 살내투광등	7,829㎡

현 수탁자 현황

수탁자	주소	기간	비고
거창군 테니스협회	-	2023.01.01. ~ 2025.12.31.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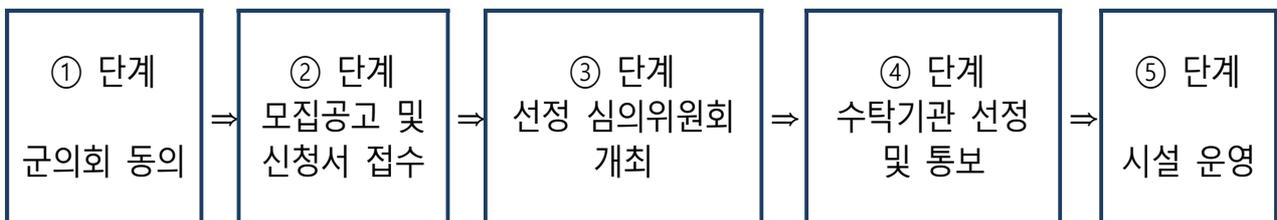
○ 위탁 및 사용료 : 위탁료 2,500천원(년간)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2025.12.31.) 도래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위탁내용 : 테니스장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 추진절차



V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5. 8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10. 1. ~ 15.(15일간)
- 접수기간 : 2025. 10. 15. ~ 25.(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관내 일간신문 등
- 공고내용 : 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생활체육 지도자 3급(경기지도자 3급이상, 유사자격증)이상 소지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 대표 선수단으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기단체, 체육단체, 개인
- 위탁사무 : 테니스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5. 11월 중
- 장 소 : 체육시설사업소 회의실
- 심의위원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심사기준

항목(7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3개항목)
1. 사업계획 적정성	1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발전방향 - 운영 및 관리계획의 합리성
2. 재정운영 계획	10	- 수지분석, 수입증대 방안 등 - 수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방안 등
3. 조직 및 인력운영	25	- 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 시설관리 능력 확보 및 운영
4. 시설운영 활성화	20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타 기관 시설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대회 및 행사 등 기회운영 능력
5. 이용자 안전관리	10	- 이용자 안전대책 및 방지 방안 등
6. 지역사회와의 협력	20	- 지역사회 교류 및 공헌 방안 - 저소득층, 소회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7. 위탁자 보유자산	5	- 운영비 담보 능력 등

○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 합산 후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공개모집 신청자 단독일 경우 또는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위탁계약 체결 : 2025. 12월중

○ 위탁기간 : 2026. 1. 1. ~ 2028. 12. 31.(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VI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5. 8월
- 공개모집 : 2025. 10월
- 심사위원회심사 선정 : 2025.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5. 12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2022.11.30.)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11.30.)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

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조전부 개정 2018.10.31. 향삭제등개정 2022.4.1.)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4.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의 증명서류

가.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체육시설 관리 위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